

(제38회 - 2차 본회의)

##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0. 4. 21  
자치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2월 10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2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38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
제2차(2000. 4. 20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고용석)

#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(1999. 4. 30 대통령령 제16267호)됨에 따라  
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 
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공공시설의 위탁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의 공공시설로 규정  
하고 수익목적의 사용시 유상사용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4조).
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(안 제21조제1항제5호 내  
지 제9호).
-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종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부과  
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토지평정가격(공시지가)의 1000분의 10으로  
부과하도록 함(안 제22조제2항).

-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세부적으로 정함(안 제23조).
- 건물 및 건물부지 대부료 산출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(안 제25조).
-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 관리신탁, 부동산 처분신탁, 토지신탁으로 정함(안 제31조의 2).
- 매각대금 감면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함(안 제38조의 2)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철호)

-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관련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사용료 부과사항,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, 공공재산심의회 심의대상,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,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육성을 위한 대부·매각 관련조항, 농경지 실경자에게 경작의 목적의 대부료는 토지평가의 1000분의 10으로 경감 부과하는등
- 조례 운영 현실에 맞고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 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### 7. 기타사항 : 없 음